

인천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0가합676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양선화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22. 5. 26.

판결 선고 2022. 7.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41,568,171원 및 그 중 536,497,077원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각 2021. 2. 1.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48,845,670원 및 그 중 444,696,266원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각 2021. 2. 1.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0. 2.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2020. 2.

14. 접수 제49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2. 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84,078,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84,0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의 보증계약 체결 및 피고 B의 연대보증 등

1) 원고는 2015. 5. 15., 2018. 6. 22. 및 2019. 9. 2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고 회사가 D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을 때 그 대출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각 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보증계약'이라고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위약금,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1)에 따른 지연손해금, 기타 원고가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제1, 3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가 위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2015. 5. 15.	2018. 6. 22.	2019. 9. 20.
대출기관	D은행	D은행	D은행
보증금액	270,000,000원 (이후 229,500,000원으로 변경)	90,000,000원	218,500,000원
대출예정금액	300,000,000원	100,000,000원	230,000,000
보증기한	2016. 5. 13. (이후 2020. 5. 8.로 변경)	2019. 6. 21. (이후 2020. 6. 19.로 변경)	2020. 9. 19.

2) 이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D은행에 각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2020. 2. 7. 피고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2,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2020. 2.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D은행은 2020. 5. 9.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금 원금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D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0. 12. 15. 아래와 같이 합계 536,497,07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 사건 제1보증계약	229,500,000원	5,035,455원	234,535,455원
이 사건 제2보증계약	90,000,000원	1,800,811원	91,800,811원
이 사건 제3보증계약	205,386,200원	4,774,611원	210,160,811원
합계	536,497,077원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위와 같이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4,667,360원이다.

이 사건 제1보증계약	2020. 5. 8.	2020. 12. 15.	229,500,000원	$2,766,570\text{원}^2) = 229,500,000\text{원} \times 20/1000 \times 220/365$,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이 사건 제2보증계약	2020. 6. 19.	2020. 12. 15.	90,000,000원	$921,690\text{원}^3) = 90,000,000\text{원} \times 21/1000 \times 178/365$
이 사건 제3보증계약	2020. 9. 18.	2020. 12. 15.	205,386,200원	$979,100\text{원}^4) = 205,386,200\text{원} \times 20/1000 \times 87/365$
	4,667,360원			

3)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403,73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9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위변제금,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연대보증한 이 사건 제1, 3보증계약에서 정한 대위변제금,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B은 2020. 4. 4. 이 법원에 '위 피고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변제금액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위 준비서면은 2022. 4. 21.에 열린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는바,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41,568,171원(= 대위변제금 합계 536,497,077원 + 위약금 합계 4,667,360원 + 법적절차비용 403,73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536,497,077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20.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2.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 중 448,845,670원(= 이 사건 제1보증계약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34,535,455원 + 이 사건 제1보증계약으로 인한 위약금 2,766,570원 + 이 사건 제3보증계약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10,160,811원 + 이 사건 제3보증계약으로 인한 위약금 979,100원 + 법적절차비용 403,73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444,696,266원(= 234,535,455원 + 210,160,811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20.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2. 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청구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피고 B이 이 사건 제1, 3보증계약에서 정해진 구상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으로 448,845,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한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비록 피고 B이 피고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으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피고 회사의 구상금채무 등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②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기 전인 2020. 1. 1.경부터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③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있는 후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2020. 5. 9.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등

(1)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피고 B이 피고 C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B은 원고 등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 C도 원고 등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 C은 피고 B과 친구 사이인 점,

② 피고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피고 C은 당초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그 이후 추가로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C이 선의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930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658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위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2. 14.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19. 9. 20.경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0. 2. 7.까지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위 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당시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는 없고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권자의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배상청구권은 동일한

소송물이어서, 채권자가 원물반환만을 구하는 경우에 법원은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이는 채권자가 가액배상을 구하나 법원의 심리 결과

원물반환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피고 B에게 원물반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

판사정승진

판사박승균

별지

1)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2019. 3. 31.까지는 연 10%, 2019. 4. 1.부터는 연 8%이다.

2) = 229,500,000원 $\times$ 20/1000 $\times$ 220/365,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3) = 90,000,000원 $\times$ 21/1000 $\times$ 178/365

4) = 205,386,200원 $\times$ 20/1000 $\times$ 87/365